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2021. 2.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목 차

I . 추진경과	1
II. '21년도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	3
1. 추진목표	3
2. 추진과제	3
① 열린어린이집 확대	3
② 열린어린이집 내실화	4
③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관리 시스템화	5
III.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세부사항	6
1. 선정대상	6
2. 선정기준	6
3. 관리체계	8
4. 선정절차	9
5. 재선정	10
6. 선정취소	11
IV. 행정 조치사항	12
붙임 1. 2021년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p.13)	
붙임 2. 열린어린이집 선정 간소화 방안(p.22)	
붙임 3. 2020년 열린어린이집 유형별, 선정 현황(p.23)	
붙임 4. 열린어린이집 선정서(p.24)	
붙임 5. 열린어린이집 관련 양식(p.25)	

'21년도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

① 추진목표

목 표	부모참여 중심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로 안심보육 환경 조성	
추 진 과 제	과제	세부 과제
	1. 열린어린이집 확대	① 열린어린이집 확대(7,532→ 9,000개소) (시군구별 어린이집 최소 25% 이상) ② 인센티브 확대 ③ 운영승계 기준 완화
	2. 열린어린이집 내실화	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활동 인정기준 마련 ② 운영위원회 지역사회 인사 참여 활성화
	3.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관리 업무 간소화	① 열린어린이집 신청 및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 ② 열린어린이집 통계 시스템 구축

② 추진과제

< ① 열린어린이집 확대 >

- 시군구(229개)별 관할 어린이집 최소 25% 이상을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선정
*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에 지속적으로 배점 확대
- 신규 및 재선정으로 '22년까지 11,000개소 이상 확대
* '17년 1,859개소 → '18년 3,404개소 → '19년 5,291개소 → '20년 7,532개소 →
'21년 9,000개소 → '22년 11,000개소(전체의 30% 이상)



열린어린이집 인센티브 확대

열린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우선 지원

* 정원총족율 85%미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교재교구비에 대하여 열린어린이집은 정원총족율 상관없이 우선 지원 대상 포함

열린어린이집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시정명령 후, 개선이 완료된 경우 인센티브 제공

열린어린이집 운영 승계 기준 완화

(대표자 변경 및 국·공립 전환 시) 선정권자(시·도 또는 시·군·구청장)가 열린어린이집의 지속적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 열린어린이집 선정 유지 가능

(소재지 변경 시) 공간의 개방성 확인하여 선정 유지 가능

< ② 열린어린이집 내실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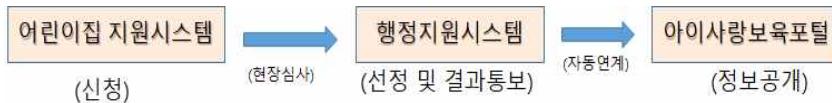
-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활동에 대한 열린어린이집 프로그램 활동 평가 기준 마련
- (대상)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 (평가기준) 서면, 온라인, 전화상담, 어린이집의 zoom 등 영상을 통한 부모참여프로그램 다양한 운영형태 인정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지역사회 인사 참여 활성화

- 보육교직원 및 부모 외에 지역사회 인사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참여의무가 없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인사 참여시 가점 부여

< ③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관리 시스템화 >

- 열린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열린어린이집 선정심사 및 점검 등 업무 간소화

- (신청) 어린이집별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열린어린이집 신청
 - * 21.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공지 예정
- (선정 및 결과통보) 시스템을 통해 열린어린이집 신청 어린이집 확인, 현장 심사 후 최종 선정·결과통보
- (정보공개)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를 어린이집 정보에 포함하여 공개



- 열린어린이집 통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계관리 지원

- 유형별 열린어린이집 현황, 주기별 현황 등 열린어린이집 통계 지원을 통해 행정업무 간소화

III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세부사항

① 선정대상

- (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으로 참여·선정 가능

② 선정기준

구분	내용
선정 요건	① 개방성(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 창구) - 공간 개방성(침관실 청문, 투명 창 중 1개 이상 설치)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②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나. 부모 개별 상담(연 2회 이상) 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또는 조합(협동어린이집) 총회(분기별 1회 이상) 라. 부모교육(연 2회 이상)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바. 부모만족도조사(연 1회)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 연중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아. 자체 부모모니터링(연 2회 이상)
	③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의견 조사(연 1회)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분기별 1회)
	④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연 2회 이상)
	⑤ 자체 자체 선정기준

- (세부 선정기준) 어린이집의 구조·운영(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자체 자체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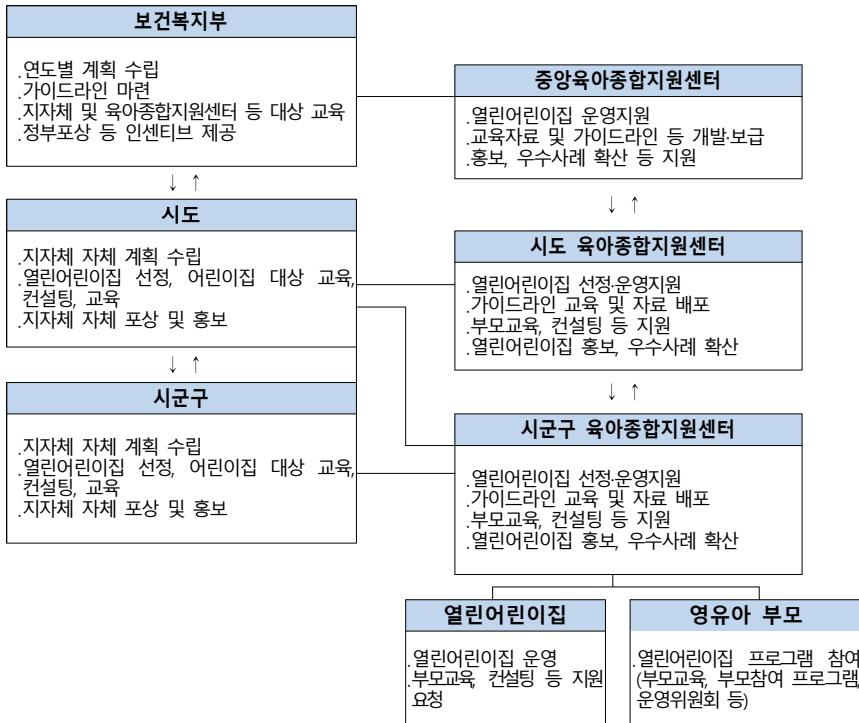
- 신규(재선정) 선정 시 세부 선정기준을 적용 후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1. 개방성(20점) 2. 참여성(30점) 3. 지속가능성(5점) 4. 다양성(3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종합점수 상위 순(재선정은 80점 이상)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신규(재)선정 해야 함

선정 항목	배점	비고
1. 개방성	30	
○ 공간 개방성	15	*보육실 문의 투명창 인정기준 :성인 상반신 높이에 위치하며 투명창은 보육실 문의 약 30% 이상으로 설치하여 상시 시야가 확보되는 투명창에 한함
- 참관실(관찰실)이 어린이집 내 보육실 전체에 설치된 경우 - 보육실 중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고, 복도에서 전체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참관실(관찰실)이 혼합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15	
- 보육실 문에 투명 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점 가점 부여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한 경우 13점 배점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가 혼합된 경우(전체 보육실)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의 보육실이 50% 이상 설치된 경우 1점 가점 부여 *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점 가점 부여	10 (12) (13) 10 (11) (12)	
○ 부모 공용공간(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5	
○ 정보 공개	5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 정보공개는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0점의 3단계로 평가	5	
○ 온라인 소통 창구	5	
- 어린이집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등 운영		
2. 참여성	40	
○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4	
- 실시기록 충족		
○ 부모 개별상담(연 2회 이상,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4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이상)	4	
○ 부모교육: 연 2회 이상	4	
- ①연간운영계획 ②실시횟수 ③실시기록 모두 충족	4	
- 실시횟수만 충족 시	2	
○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 날' 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10	
- ①연간운영계획 ②실시횟수 ③실시기록 모두 충족	10	
- 실시횟수만 충족 시	5	
○ 부모만족도 조사 : 연 1회	4	
- 실시기록 충족	4	
○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운영)	6	
○ 자체 부모모니터링(연 2회 이상)	4	
- ①실시횟수 ②실시결과 안내기록 모두 충족		
3. 지속가능성	10	
○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의견조사 : 연 1회	6	
○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 분기별 1회 이상	4	
4. 다양성	5	
○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3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 연 2회 이상	2	
5. 자자체 자체 선정기준	15	
총 점	100	

[3] 관리체계

- (보건복지부) 연도별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및 육아종합 지원센터 등 교육,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열린어린이집 선정, 어린이집 대상 교육, 지자체 자체 포상 등
- (설명회) 지자체(복지부 주관), 육아종합지원센터(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설명회 및 지자체별(지자체,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대상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설명회(1회 이상) 개최
- (컨설팅) 지자체 주관(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으로 열린 어린이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컨설팅·상담 지원 실시
- (교육, 홍보) 지자체 주관(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으로 부모교육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료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연중)
 -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열린어린이집 선정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현장 출장 등을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여비 등 지급 조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육자료 및 가이드라인 개발·제작, 홍보 및 우수사례 확산 등 지원
-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지원, 가이드라인 교육 및 책자 배포, 부모교육·컨설팅 지원, 열린어린이집 홍보, 우수사례 확산

< 열린어린이집 운영관리 체계 >



④ 선정절차

(선정방법)

-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시군구별 관할 어린이집 개소수 대비 최소 25% 이상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함
 - * 열린 어린이집 선정 실적은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에 지속 반영
- (선정공고) 지자체의 장(시·도, 시·군·구청장)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또는 사업계획을 통보 함
- (선정심사) 선정계획에 따라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 등을 구성 하여 선정 심의 절차 진행
-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함(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 활용 가능)

- 다만, 선정위원회 구성시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육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공무원 외에 외부 위원을 50% 이상 참여 가능하도록 하여 선정의 객관성 확보 조치
- 선정 시 불필요한 서류작성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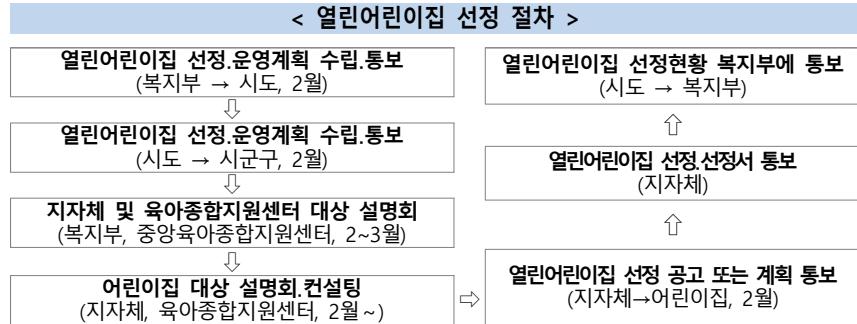
<어린이집 현장 부담 완화 조치>

- ① 평정항목 중 개방성(공간개방성, 부모공용공간, 정보공개), 참여성(신입원아 부모오리 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은 현지확인을 통해 실시하고 서류 및 사진자료 제출 금지
- ② 현지확인 항목 외에 지자체 별도로 정하여 현지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확인으로 확인 가능

- 사업실적 평정기간은 2020.11월 ~ 2021.10월(1년)까지를 기준으로 함
 - * 연속 재선정의 경우 유효기간 2년, 2년 연속 재선정의 경우 유효기간 3년
- (선정) 열린어린이집 선정주기 표준화 관리
- 매년 지자체장이 신규·재선정 어린이집 대상으로 선정서 배부, 선정 유효기간은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
 - 지자체장은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에 대하여 선정서를 반드시 배부

⑤ 재선정

- 매년 8~10월에 지자체장이 유효기간이 도래한 열린어린이집에서 재선정을 희망 시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함(신규 선정기준과 동일)
 - * 재선정 기간이 8~9월일 경우, 평정기간 1년을 준용하여 평정할 것
- 선정기간은 신규선정 이후 연속하여 재선정 시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2년으로 하고, 2회이상 연속하여 재선정 시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3년으로 함



⑥ 선정취소

- (취소권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취소사유)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선정취소 사유 추가 가능
 - ①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 ②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③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 ④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경우
- (취소절차) 열린어린이집 선정권자는 선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취소 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선정취소 통보 실시
 - 시·도지사가 선정권자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선정취소 사유 발생 7일 이내에 발생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서면보고하고 시·도지사가 취소절차 진행
 - 열린어린이집 운영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의견제출통지 생략 가능
 - 시·군·구청장은 선정취소된 어린이집의 선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선정서를 회수하여 폐기조치
 - 선정취소일은 선정취소를 통보한 날로 함
 - 열린어린이집 선정 취소된 어린이집은 선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열린 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IV 행정 조치사항

- ① '21년 열린어린이집 설명회*(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자체)
 - 일시·방법 : 2월 중(예정), 실시간 영상
 - 참석자 : 시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중앙, 시도, 시군구) 담당자
 - 주요내용 : '21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주요변경사항 설명회
 - * 설명회 : 2021년 보육사업지침 교육 등에 포함하여 시행
- ②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관리(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자체의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 수립·통보(시도→시군구→어린이집, 2월)
 - 지자체 주관(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으로 어린이집 대상 설명회 개최(2~3월)
 -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희망조사 실시(3월~), 희망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상담지원 등(육아종합지원센터)
 - 2021년 열린어린이집 사업계획 및 운영현황 제출(시군구→시도→복지부, 4.30.(금)까지)
 - * 지자체별 열린어린이집 선정 등 사업계획 및 운영현황
 - 열린어린이집 정기점검 실시(6~7월)
- ③ 열린어린이집 선정(지자체, [신규] 10~11월, [재선정] 8~10월)
 - 선정기준, 절차를 준수하여 선정 후 선정서 반드시 배부
 - 열린어린이집 미선정 시, 해당 지자체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적용되지 않는 바, 반드시 선정을 추진하여 어린이집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바람
 -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국공립 재위탁 심사 시 가점 및 배점, 보조교사, 교재교구비 우선지원, 포상 및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 반영, 자율운영 보장을 위한 조치(부모모니터링,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 등을 제외함

- (배점) 4점
 - 어린이집 관계자, 부모 외 지역사회 인사가 운영위원회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1점 가점 부여 (가정어린이집에 한함, 가정어린이집 외는 지역인사 필수)

라. 부모교육

- (개요) 영유아 발달, 자녀양육관, 육아정보 등에 대해 소그룹 및 대그룹으로 부모교육을 실시
- (평정기준) 연 2회 이상
 - ① 연간운영계획, ②실시횟수, ③실시기록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단, ②실시횟수만 충족 시 50% 인정(2점 부여)
 -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교육(실시간 회상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등을 이수하고 실시기록(참여 부모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인정)
-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실시기록 등 증빙자료 ★ 2회 이상 실적 확인
- (배점) 4점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 (개요) 열린어린이집의 날로 선정하여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예: 자능기부(1일 교사), 자원봉사 및 도우미, 수업보조, 급식보조, 나들이 및 견학지원, 대체인력, 부모참여수업 등)
- (평정기준) 분기별 1회 이상
 - ① 연간운영계획, ②실시횟수, ③ 실시기록 등 증빙자료 모두 충족해야 함
 - * 단, ②실시횟수만 충족 시 50% 인정(5점 부여)
 - 코로나로 인해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연기하고 관련 내용을 부모에게 안내하거나, 실시간 화상을 통한 부모참여프로그램 실시 인정
-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실시기록(운영일지 등) 등 증빙자료 ★ 4회 이상 실적 확인
- (배점) 10점

바. 부모만족도 조사

- (개요) 부모 대상으로 어린이집 환경, 건강, 보육과정, 상호작용, 운영의 기방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평정기준) 연 1회
 - 결과기록 등 증빙자료를 통해 조사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결과기록(운영일지 등) 등 실시관련 증빙자료 ★ 1회 이상 실적 확인
- (배점) 4점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

- (개요) 부모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을 참관하는 것
- (평정기준) 상시 연중 운영
 - ① 참관안내문 현장 게시(참관자격, 시기 및 방법 등) ②부모참관 상시운영 모두 충족해야 함
- (확인방법) 현장확인(상시운영 여부 면담확인, 참관안내문 현장 게시)
- (배점) 6점

아. 자체 부모모니터링

- (개요) 부모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안전·급식·위생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전 부모에게 계획 및 결과 공지
- (평정기준) 연 2회 이상
 - ① 자체 부모모니터링 실시, ② 전 부모 대상 자체모니터링 실시 계획 및 결과 공지 모두 충족해야 함
- (확인방법) 자체점검표*, 실시 계획 및 결과 안내기록 등 증빙자료 ★ 2회 이상 실적 확인
 - * 자체모니터링 점검표, 부모모니터링단 점검표, 어린이집 평가 점검표 등 활용)
- (배점) 4점

3.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의견조사

- (개요) 부모참여 활동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참여여부 조사는 해당 안됨)
 - * 수요조사는 내용, 대상, 시간, 방법 등 부모참여활동 의견수렴을 위한 조사여야 함(일부 항목만 조사 가능)
- (평정기준) 연 1회
 - ①결과기록 ②수요조사 반영여부* 모두 충족해야 함
 - * 수요조사 반영여부는 참여성('부모교육' 또는 '부모참여프로그램' 등)에서 확인(내용, 시간, 대상 등)
 - 반영여부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없이 '참여성'에서 제출한 실시기록 등에서 확인
 - (확인방법) 수요조사 결과기록, 수요조사 반영여부 등 증빙자료 ★ 1회 이상 실적 확인
 - (배점) 6점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 (개요) 부모참여활동 운영 정보를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미참여 부모의 참여 독려를 위한 부모참여활동 결과 등 공유
- (평정기준) 분기별 1회
 - ①연간운영계획, ②안내문(참여안내 및 결과안내), ③실시횟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코로나로 인해 부모참여활동 계획을 변경하여 부모에게 안내한 경우 인정
 -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안내문 등 증빙자료 ★ 4회 이상 실적 확인
 - (배점) 4점

4.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 (개요) 부모참여활동이 연간 균형적으로 다양하게 계획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일회성 행사 지향)
- (평정기준) 부모참여활동의 대상, 내용, 시기, 방법, 장소 등이 다양하게 계획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 (확인방법) '2. 참여성'의 관련 실시기록 등에서 확인
- (배점) 3점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 (개요) 지역사회의 공원, 산책로 등을 활용한 일상생활 관련 활동, 일반적인 자원(도서관, 초등학교, 우체국, 노인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마트 등), 지역사회의 특별한 자원(해변, 생태습지, 박물관, 기념관, 유적지 등)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 지역사회의 경찰관, 소방관, 보건소 직원 등이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교육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부모참여 활동 운영 여부
- (평정기준) 연 2회 이상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부모참여 활동 운영 여부(부모대상 또는 영유아·부모 함께 참여
 - *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미인정
- (확인방법) 안내문, 운영일지,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2회 이상 실적 확인
- (배점) 2점

5. 지자체 자체 설정기준

- (개요) 지자체가 지역 및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자체 설정기준을 정하여 적용
- (평정기준 및 확인방법) 지자체에서 정하여 적용
- (배점) 15점

- 부모 자율모임 구성 및 운영 - 인근 어린이집이 연합하여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 어린이집 미이용 부모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상담 등 제공 - 열린보육체험단 운영 등

불임 1-4

열린어린이집 정기점검 항목 및 확인매뉴얼

* 어린이집명 : _____

구분	항목	확인방법	항목 배점	배점
개방성	◦ 공간개방성	· 어린이집 내 모든 보육실 내부를 보육실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관찰방해요인 확인(시트지, 장식 등)) 환경이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참여성	◦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 어린이집 운영일지 또는 부모 공지 안내문에서 실시여부 확인	연 1회 이상	4
	◦ 부모 개별상담		연 1회 이상	4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총회 또는 이사회		연 4회 이상(분기 1회)	4
	◦ 부모교육		연 2회 이상	4
	◦ 부모참여프로그램		연 4회 이상(분기 1회)	10
	◦ 부모만족도 조사		연 1회 이상	4
	◦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		참관안내문 어린이집 게시여부 현장 확인	6
	◦ 자체 부모모니터링		· 어린이집 운영일지 또는 부모 공지 안내문에서 실시여부 확인	4
지속가능성	◦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의견조사	· 어린이집 운영일지 또는 부모 공지 안내문에서 실시여부 확인	년 1회 이상	6
	◦ 부모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공지		년 4회 이상(분기 1회)	4
다양성	◦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 어린이집 운영일지 또는 부모 공지 안내문에서 ‘부모교육’ 또는 ‘부모참여프로그램’ 실시내용 확인	‘대상, 내용, 시기, 방법, 장소’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었는지 확인	3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활동		‘지역사회와 연계 여부’ 확인	2
지자체 선정기준		-		-
총점		55		

* 부모공지 안내문은 실시일자, 내용 등 객관적으로 실시여부 확인 가능한 온라인 소통 창구(스마트알림장 등)로 확인하며, 온라인 소통이 어려운 환경에는 선정시 제출(확인) 서류로 현장확인

* 정기점검은 총점 55점 중 40점 이상 미 유지시 유효기간 내 인센티브 제외

불임 2

열린어린이집 선정 간소화 방안

구분	선정항목	확인방법	
		개정 전	개정 후
2. 참여성	1. 개방성 <준비 사항 없음>	-	-
	◦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자료 안내문 신입원아 명단 실시기록(운영일자 등)	실시기록(운영일자 등)
	◦ 부모 개별상담	연간운영계획 안내문(가정통신문 등) 실시기록(운영일자 또는 상담기록)	연간운영계획 실시기록(운영일자 또는 상담기록)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 (협동어린이집) 총회 또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안내 공지자료	·총회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회의록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안내자료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안내 공지자료
	◦ 부모교육	연간운영계획 안내문 실시기록	연간운영계획 실시기록
	◦ 부모참여프로그램	연간운영계획 안내문 실시기록	연간운영계획 실시기록
	◦ 부모만족도 조사	만족도조사지(양식) 안내문 결과기록	연간운영계획 결과기록
	◦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상시) <현장확인>	상시운영 여부 참관안내문 현장게시 등	현행 유지
3. 지속가능성	◦ 자체 부모모니터링	-	자체모니터링 점검표 모니터링 결과 안내기록
	◦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의견조사	수요조사 설문지(양식) 실시기록 수요조사 반영여부 (2. 참여성 서료에서 확인)	설시기록 수요조사 반영여부
4. 다양성	◦ 부모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공지	연간운영계획 안내문	현행 유지
	◦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2. 참여성의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실시기록에서 확인	현행 유지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활동	2. 참여성의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실시기록에서 확인	현행 유지
5. 지자체 선정기준		◦ 지자체별 상이	-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통보의 제목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2. 당사자	대 표 자 성 명		어린이집 명
	주 소		
3. 의견			
4. 기타			
<p>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년 월 일</p> <p>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p> <p>성명 (서명 또는 인)</p>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통지서	
<p>1. 어린이집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명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주소 : ○ 어린이집고유번호 : ○ 대표자 성명 : <p>2. 처분 내용</p> <p>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귀 원에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를 통지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제목 :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 처분사유 : <p style="text-align: right;">2021. . .</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p>	

열린어린이집 운영 포기원					
어린이집명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팩스번호	<input type="text"/>	
설립유형	<input type="checkbox"/> 국공립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 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가정 <input type="checkbox"/> 협동 <input type="checkbox"/> 직장				
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원장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선정취하 사유					
위와 같이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원을 제출하오니,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input type="text"/>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